KiRi Weekly 2016.9.12.
이슈 분석

# 퇴직연금 추가납부제도의 도입 필요성

강성호 연구위원

요약

■ 노후준비가 덜 된 퇴직직전세대에 대한 추가적 연금자산 축적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50세 이상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추가납부제도(catch-up plan)'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호주의 경우 50세 이상자에 대해 다른 연령층보다 강한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연금자산 축적을 강화하여 왔음. 이러한 점에서 퇴직을 시작하고 있는 우리나라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 강화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따라서 우리나라도 퇴직직전세대에 대해 추가납부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이들 세대를 대상으로 현행 연금세액공제 대상금액(연간 700만 원)을 증액하거나 여기에 적용되는 공제세율을 높여주는 탄력적 세제정책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 노후준비가 덜 된 퇴직직전세대(베이비부머와 50세 이상 가입자 포함)에 대한 추가적 연금자산 축적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우리나라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는 부모 및 자녀 부양이라는 이중적 부양부담과 함께 공적연금의 미성숙, 사적연금의 가입 저조 등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한 실정임.[1)]
  - 이들 세대의 연금 가입률을 보면, 공적연금 86.3%, 퇴직연금 27.9%, 개인연금 51.9%로 공적연금을 제외하고는 가입률이 저조하고[2)] 급여수준 또한 낮음.[3)]
- 또한 베이비부머의 자산구성을 보면, 부동산에 편중되어(부동산 자산 비중 76%, 금융 자산 비중 21%[4)]) 노후소득의 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5)]

1) 보건복지부 국민인식조사(2011)에 의하면, 베이비부머 중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경우가 53.7%로 나타남; 김경아 · 김헌수(2013),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 보장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참조.
2) 정경희(2012), 「베이비부머의 가족생활과 노후생활 전망」,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참조.
3) 공적연금은 미성숙으로, 퇴직연금은 짧은 도입기간과 중도인출 등으로, 개인연금은 낮은 유지율로 인하여 급여수준이 낮음.
4) 통계청(2010), 가계금융조사 원자료.
5) 김경아 · 김헌수(2013); 금재호 · 송영남 · 전영준 · 김병덕 · 이윤경(2013), 『베이비부머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 노동연구원.

■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호주에서 시행 중에 있는 퇴직연금의 추가납부제도(catch-up plan)[6]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베이비부머의 추가적 연금자산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함.

- 일반적으로 추가납부제도는 퇴직직전세대인 5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해 추가적인 보험료 납부를 허용하고, 납부액에 비례하여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음.

■ 미국의 추가납부제도[7]는 두 가지 유형의 코호트[8]와 퇴직연금 형태별로 차등 적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 미국의 추가납부제도는 50세 이상 경제활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Age 50 + Catch-Up)와 퇴직(65세) 前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Special 457 Catch-Up)로 구분됨.[9]
  - 50세 이상 경제활동자에 대해서는 연간 $6,000까지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퇴직(65세) 前 가입자에 대해서는 65세 이전 3년 이내에 $36,000[10]까지 납부할 수 있음.
- 이 중 50세 이상 경제활동자에 대한 추가 납부액은 퇴직연금 형태별로 차등화됨.[11]
  - IRA(개인형 퇴직계좌) 중 전통형과 Roth IRA[12]는 연간 $1,000(2016년)[13]까지 추가 소득공제됨.
  - 401(k), 403(b) 등[14]은 연간 $6,000(2016년)[15]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허용함.
  - SIMPLE(Saving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 IRA[16]는 연간 $3,000(2016년)[17]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허용함.

---

6) 호주의 경우는 'catch-up payments'로 표현하고 있음.
7) 'Part of the Restoring Earnings to Lift Individuals and Empower Families(RELIEF) Act of 2001'에 근거하며, 2002년부터 시행됨(http://www.money-zine.com/financial-planning/retirement/401k-contribution-and-catch-up-limits/).
8) 두 가지 유형의 코호트는 '50세 이상 경제활동자인 가입자'와 '63~65세 가입자'를 의미함.
9) https://www.nrsforu.com/iApp/tcm/nrsforu/learning/library/catch-up_contributions.jsp.
10) https://www.nrsforu.com/iApp/tcm/nrsforu/learning/library/irs_rules.jsp.
11)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cola-increases-for-dollar-limitations-on-benefits-and-contributions.
12) IRA는 이직 시 퇴직연금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활성화되었으며,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고 소득공제됨. 이 중 전통형 IRA는 보험료에 소득공제되나, Roth IRA는 보험료가 아닌 퇴직연금에 비과세하는 특징이 있음.
13) 기본 기여한도 $5,500(2016년)에 추가하여 $6,500까지 세제혜택을 받음.
14) 401(k)는 일시금 혹은 연금수령을 선택할 수 있는 전형적 퇴직연금이며, 403(b)는 비영리단체의 근로자, 병원단체연합회, 자영성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음(홍범교·박수진·정경화(2013), 『주요국의 연금세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이러한 401(k)형태의 퇴직연금은 대부분 DC형으로 운영되며, 보험료는 소득공제 됨. 여기서 수치와 영문자는 법조항을 의미함.
15) 기본 기여한도인 $18,000(2016년)에 추가하여 $24,000까지 세제혜택을 받음(https://www.irs.gov/retirement-plans/plan-participant-employee/retirement-topics-contributions).
16) 10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제도임(홍범교 외 2013).
17) 기본 기여한도인 $12,500(2016년)에 추가하여 $15,500까지 세제혜택을 받음.

■ 호주의 추가납부제도는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퇴직연금(superannuation pension) 가입자를 구분하지만, 두 집단 모두에 적용되는 특징이 있음.[18]

- 호주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 적립액이 $500,000[19] 이하이면서 연간 한도인 $25,000를 채우지 못할 경우, 5년 동안 연간 한도 차액만큼 추가납부(catch-up payments)할 수 있음.
  - 2017년 1월 이후부터 모든 가입자가 세제혜택을 받게 되는 기본납부액은 연간 최고 $25,000이며, 적용세율은 15%로 저율 과세되므로 그만큼 세제혜택이 발생함.[20]
- 특히, 50세 이상은 $35,000까지 추가 납부할 수 있으나, 50세 미만은 $30,000까지 가능함.

■ 앞의 선진국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퇴직직전세대에 대한 효과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추가납부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추가납부제도는 기존의 연금세제를 조정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점에서 퇴직직전세대의 연금자산 확충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관련하여, 퇴직직전세대를 대상으로 현행 연금세액공제 대상금액(연간 700만 원[21])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거나 공제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방안 1] 공제 대상금액인 연간 700만 원[22] 범위 내에서 연령별로 차등적용함(예: 25~35세 400만 원, 36~45세 600만 원, 46~55세 800만 원, 55세 이상 1,000만 원).
  - [방안 2] 공제 대상금액은 모든 연령에 동일하게 적용하되, 5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해서는 공제세율[23]을 20% 이상으로 함.
  - 단, 역진적 세제혜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대상자의 소득을 일정 수준(예: 총소득기준 연간 5,500만 원) 이하인 가입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대상자는 일정 기간 이상의 연금수령(예: 최소 15년 이상)을 요건으로 할 필요가 있음. KiRi

18) Budget Submission 2016-2017, SMSF Association(Australia); https://www.australiansuper.com/campaigns/federal_budget_2016.
19) 호주 달러 기준임(이하 동일). 2016년 9월 7일 기준 840.63원임.
20) 호주 소득세율을 살펴보면, $18,200까지는 면세되고, $18,200~$37,000에서는 최저세율인 19%가, $180,000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45%가 적용됨(https://www.ato.gov.au/rates/individual-income-tax-rates/).
21) 연금저축(연간 400만 원 한도)과 IRP 납부액을 합한 금액.
22) 대상자의 노후보장 수준을 고려하여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3) 현재는 연령과 무관하게 5,5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15%, 5,500만 원 초과 소득자는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